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797
----------	------

제출일자 : 2026. 3. 6.

제출자 : 달성군수



1. 제안이유

우리군에서 주최·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축제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대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를 발굴 및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 가. 지역축제 추진을 위한 출연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나. 지역축제 추진을 위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다. 지역축제 추진에 따른 체험 및 부대행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라. 지역축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셔틀버스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붙임)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기타
 - (1) 입법예고(2026. 1. 30. ~ 2. 19.) 결과 :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5) 부서합의 : 해당사항 없음
 - (6)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축제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축제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대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를 발굴 및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축제”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문화예술과 관광진흥, 지역 고유문화 창달 등을 목적으로 주최·주관하는 비슬산 참꽃문화제, YES! 키즈존, 달성 100대 피아노 등과 같은 각종 축제 및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가.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인만 참여하는 행사

나.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예술행사

다. 그 밖에 경로잔치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 성격이 약한 행사

2. “셔틀버스”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노선에 따라 일정한 구간을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3. “이용자”란 제1호의 지역축제를 이용하고 방문하는 군민과 국내·외 관광객을 말한다.

4. “기념품 등”이란 지역축제에서 진행되는 각종 체험 및 부대행사에 이용자가 참가하여 직접 만든 제작품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군수는 지역축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등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출연 및 재정지원) 군수는 지역축제를 추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군이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

에서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지역축제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축제의 기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문화 활동 또는 축제 관련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과 관련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사무에 대한 감독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가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수탁기관에게 시정 또는 취소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체험 및 부대행사) ① 군수는 지역축제를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축제 예산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각종 체험 및 부대행사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의 체험 및 부대행사 등에서 이용자가 만든 기념품 등을 그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셔틀버스) ① 군수는 지역축제를 방문하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셔틀버스를 운영하기 위해 군 소유 차량이나 임차 버스를 활용하며, 이용자에게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역축제의 성격, 위치 등을 고려하여 셔틀버스 운행노선, 운행일자, 운행시간 등을 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예산부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셔틀버스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군수는 지역축제 활성화에 상당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셔틀버스 운영에 따른 비용 발생(안 제8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는 지역축제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으로 지역축제 추진에 따른 셔틀버스 운영은 지역축제의 특성과 장소 일정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시행될 사항으로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작 성 자

소속 및 직위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장

성명(연락처)

정해조(668-2171)